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제기구분담금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1.5. 제정(법률 제17819호, 2021.1.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4조)

- 1) 위원회를 정부위원 16명 및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함.
- 2)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국제기구 분담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조, 제6조)

- 1)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기구 분담금 기본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 중앙행정기관이 연도별 국제기구 분담금 시행계획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고, 외교부장관이 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다. 위원회의 평가 및 환류(안 제7조)

- 1)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 2)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포함, 연차별 종합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동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 의결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 조회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 행정규제 해당사항 여부 확인 예정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규모 기준 상위 13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3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국제기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촉) 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제2조 제1항제3호로 위촉된 위원, 제4조 제6항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국제기구 분담금 기본계획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조에 따른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기여 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 분담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자외교 정책의 기본방향
2.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 현황 분석
3.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기여 규모 및 성격, 중장기 납부 계획
4. 국제기구 분담금 관련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통합적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시행계획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제기구 분담금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2. 중앙행정기관별 국제기구 분담금 자체평가 결과
3.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② 외교부장관은 상기 시행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평가 및 환류) 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침을 확정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조정 한 결과를 포함하여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외교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 의결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보고서 작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 6조 제4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차별 시행계획,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종합시행 계획의 예산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원칙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외공관의 역할)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국제기구 분담금의 기여 현황 분석 및 평가 등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유엔과	
연 락 처	(02) 2100 - 7235